



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운영지침

목 차

I. 총 칙	1
II. 운영방침	3
III. 지원금 관리	7
IV. 각종서식	11

2020. 7.

『2020년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운영지침

I 총칙

1. 추진목적

- 본 지침은 인천소재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자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을 통한 근로자 장기재직 및 창업자 성공지원을 유도하여 고용창출여건 조성 및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자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일자리창출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재정 지원)

3. 용어정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 재 직 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근로계약 된 주간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창 업 자 : 인천시 사업자 등록된 지 만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자 중 소득금액증명 제출 가능한 자(대표)

4.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예산규모	480백만원
지원규모	400명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지원대상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금액 : 월세 10만원 × 8개월
지원기간	·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최대 8개월 지원 (*차년도 사업 미지속시 지원금 중단)

○ 추진절차



5. 운영주체별 역할

【인천광역시】

-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통보, 시행 지침 제·개정 승인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조회 요청 및 회신(인천시⇔군/구청)
 - 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 송부(인천시⇒ITP)

【운영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 운영기관은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을 주관
 - 사업홍보 및 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자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심사
- 사업지원 대상자 부정수급 등 관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타 인천광역시가 요청하는 사항

II 운영방침

1. 지원 자격

1) 참여대상

-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된 만19세이상·39세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직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 청년
 - (창업자)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 1년 이상 3년 미만 사업자(소득금액증명가능자)

2) 대상주택

- (주택형태) 거주자와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한 물건
 - 인천에 소재하는 주택
 -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근로자가 거주 가능한 형태
 - 월세 계약은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일 경우 거주자 본인,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
 - ※ 본인 또는 친·인척 소유의 주택은 지원 불가(주택 소유 불가)
- (계약내용)
 -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금액은 40만원 이하
 - 보증금 100%인 전세 계약자는 지원 불가
 - 인천시 관외 물건(계약) 지원 불가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 세부기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참조

4) 기타사항

- 월세지원 사업 선정자는 공고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 [예시] 2020.8월 공고 접수 → 선정자 지정 → 8월분 월세부터 소급지원
- 선정자가 전출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말까지 지급
 - * [예시] 2020.09.10. 전출했을 경우 → 2020.09.30.까지 적용

5)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 소유자
-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전세임대주택 이용자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근무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다만, 자산형성 수단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 인천드림For청년통장 신청자는 가능

2.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모집기간 : 별도 공고

2]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 제출처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4층 청년지원센터

○ 이메일 : rentincheon@naver.com

3]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1부(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 각 1부 ⑤ 주거지원 대출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조회' 크레딧포유에서 신청인 직접 발급 후 제출 ⑥ 지원신청자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⑦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20년 전체분)
취업자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③ 근로계약서 사본
창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4] 선정기준

○ (기본요건) 'II-1 지원 자격'에 준함

- 신청자 중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 선정

○ (선정시점)

- 구비서류가 이상 없이 모두 제출이 확인된 시점

- 제출 서류 심사결과 및 공적조회 회신 후 선정자에게 통보 및 안내

○ (자격심사)

▶ 참여자격 판단

· 참여자격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더라도 계속 참여 가능

· 참여도중 주택기준(임차보증금 4천만원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이

변경되었거나 타 지역 이사, 타 청년주거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취·창업 기준

· 취 업: 주 35시간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 창 업: 인천소재 사업자 등록 1년 이상 3년 미만 개인 사업자(소득증명가능자)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 1인 가구 확인 및 거주여부

- 주민등록 등본상 1인 세대 구성으로 확인

-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하여야 함

▶ 주택 임대차 계약여부

- 임대계약서의 임차보증금은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함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원칙

*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2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무방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2,635,791원이하)

<2020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2019년 보건복지부 고시 주민등록상 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자 (보건복지부 고시 2019-173호, 2019.8.5.)

(단위:원)

구분	1인가구
중위소득 100%	1,757,194
중위소득 150%	2,635,791

5] 선정프로세스



6) 선정기준

- 항목 배점표에 따라 해당지표별 정량평가 실시
 - (심사항목) 소득수준(80점), 임대료 수준(20점)

지 표	배 점	선 정 기 준					
합 계	100점						
소득수준	8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150%이하	130%이하	110%이하	90%이하	70%이하	50%이하
임대료	20점	5점	10점	15점	20점		
		80백만원 이하	60백만원 이하	40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이하		

※ 평가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저소득층 선발)

※ 임대료 환산액: 임대보증금+(월임대료×100)

7) 최종선정

- (선정방법) 심사항목 합산 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청년 지원 신청량에 따라 후순위자 별도 관리
 - 동점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임대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

8) 선정 결과 안내

- ITP 홈페이지 게재(성명 및 전화번호 일부 블라인드 게재)
 - 선정자에게는 개인별 문자 발송
 - 탈락자는 후순위 관리를 통해 예산 가용시 추가 지원 및 차년도 지원사업 안내 예정

III 지원금 관리

1. 지원금 지급 및 관리

1) 지급대상

- 지원자로 선정 후 지원금 지급신청 심사 결과 승인된 자

2) 지급내용

- (지 원 금) 월세 10만원(최대 8개월 / 생애 1회 한정)
- (지급시기) 사업 공고일 포함 선정일 기준 2개월 단위

3)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시점은 최초월의 경우 공고일 소급하여 지급
 - 산정대상기간 2개월 시점마다 신청해야 하고, 공고일 선정에 따른 해당월은 소급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은 아래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1개의 PDF로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 접수 메일주소 : itp0341@naver.com

4)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③ 임대료 이체내역서 1부(상대방 계좌번호 표기)
④ 통장사본 1부(월세 납입계좌)

5) 지원금 지급방식

- (지급방법) 선정자 월세 지급 계좌로 이체
 - 2개월 단위 신청(총 4차 / 8개월 / 생애 1회 한정)

2.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종료)

1) 선정취소

- (선정취소)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거나, 참여자가 신청 후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선정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함
- (취소절차) 하자 발견 시 인천시/ITP 직권 취소 후 신청인에게 알림

○ (취소가능기간) 선정 하자로 인한 직권 취소는 제한 기간이 없음

2) 지원중단(종료)

○ (지원중단/종료) 일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더 이상의 사업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지원금 지원중단 사유
① 인천 지역 외 전출 - 사업참여 중 중도에 인천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전출월까지 지원금 지급 가능(월세 10만원 이상 납입 증빙시)
② 월세 계약 종료 - 선정된 참여자 월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 월세 종료월까지 지원/월세계약 연장시 계속 지원 * 단 선정이후에 월세계약이 변동된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③ 타 주거지원 정책 참여 - 임대주택(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주거급여 지원 등
④ 기타 - 자격 제외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지원 중단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종료시점)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 단, “지원금을 부정하고 수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중단

3. 부정수급 조치

1) 부정수급의 개념

- 사업 참여 대상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참여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처리
- 부정수급의 경우는 사유관계 없이 해당 차수 무조건 미지급 및 기존 지급분 환수를 원칙으로 함

2) 부정수급 유형

- 지원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해당 지원자가 선정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타 지역으로 전출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해당 지원자가 건물주와 특수 관계(친인척)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였거나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3) 부정수급액 반환

- 지원자는 시행지침, 신청서, 협약서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4) 부정수급자의 참여 제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 제한
- 부정수급 확인 시 당해 연도 지원대상 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인천 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3년간 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5) 자진신고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자가 조사 착수 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부정행위를 밝힌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

4. 지원금 점검

- 운영기관은 참여 지원자에 대한 지원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은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함

5. 만족도 조사

- 월세 지원사업 지원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차년도 사업 개선 및 보완대책 마련

IV 각종서식

[서식 1]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서식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서식 4] 지원금 신청서

[서식 5] 종료신청서

[별첨 1] 증빙서류(예시)

[별첨 2] 주거정책사업

※ 각종 서식 및 제출서류 서식은 수행기관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취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 및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음

[서식3]

**「인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이메일·전입일·소득액·건강보험가입현황 •창업여부(해당자)·근로계약(해당자)·정부 및 인천시 청년주거지원 참여 등 유사사업 중복신청 여부·월세이체증·임대차계약서·행복e음 시스템 공적자료(금융재산·부채·자동차는 제외)
수집·이용 목적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월세비용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관련일정 알림, 정보전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월세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5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 및 인천시 청년주거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보유·이용 기간	• 월세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5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시청, 군구,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토지공사, 인천테크노파크 •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행복이음 등) 등 월세지원 사업 업무 추진 관련 기관
제공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공항목	• 성명·주소·이메일·연락처·고유식별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월세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5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 1

증빙서류 예시

1. 신용정보조회서

- <http://www.credit4u.or.kr/> 신용정보관리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인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일시 : 2020-06-23 18:17
발급번호 : 1343ca9-272d5e-7e04a

페이지 : 1

주민등록번호		성명		
개설·발급 정보				
구분	내역 사유	기관 정보명	발급일자	
개설발급	신용카드 (0081)	농협은행	2009-03-04	
개설발급	신용체크카드 (0083)	한국씨티은행	2005-08-13	
개설발급	신용카드 (0081)	KB국민카드	2017-11-23	
개설발급	신용카드 (0081)	신한카드 (홍합)	2007-08-10	
대출정보				
구분	내역 사유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대출	주택담보 (0031)	신한은행	2014-11-12	
대출	신용 (0031)	신한은행	2016-03-23	
대출	신용 (0031)	신한은행	2014-01-20	
대출	신용 (0031)	신한은행	2012-12-13	
대출	신용 (0031)	신한은행	2020-01-23	

중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업무목적 외 사용 및 관계자 외 누설 금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일시 : 2020-06-23 18:17
발급번호 : 1343ca9-272d5e-7e04a

페이지 : 2

채무보증정보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구분	내역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신용도판단정보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구분	내역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공공정보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구분	내역	기관 정보명	발생일자	금액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중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업무목적 외 사용 및 관계자 외 누설 금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개인비회원로그인 ⇒ 주민번호입력 ⇒ 공인인증서인증 ⇒ 증명서신청발급 ⇒ 확인 ⇒ 근무중인 사업장 클릭 ⇒ 신청 ⇒ 출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번호		발급 일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1 / 1

내역 구분	성명	가입자종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신고접수일)
국민연금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0.01.10 (2020.01.10)
산재보험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

▷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용]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 외를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창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의전화: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산재·고용보험 1588-0075)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 등 '사전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득일'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이 사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 이 사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 사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 단 [인생학] 이 사
--	---	--	---

▷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사실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발급사실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합한 정보연계서비스, 4대 사회보험이 함께 합니다.

3. 창업자 제출 서류(국세청, www.hometax.go.kr)

- ① 소득금액증명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발급 제출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1 / 1)



발급번호		소득금액증명		처리기간
4793-367-0379-23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자용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즉 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			
성명	이미정	주민등록번호	700717-*****	
(단위 : 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대상금액)		
	합계=>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 2019. - 2019.)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연수세무서장				
접수번호	501925976363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 :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과세대상금액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자 : 필요경비 차감 전 과세대상 종교인소득 -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 당해연도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담당자	송지원			
연락처	032-670-9223			



* 본 증명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별첨 2 **주거정책사업**

분야	정책	소관기관	주요내용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는 저렴한 공공주택 임대
	전세 임대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대학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매물을 직접찾아 LH에 의뢰,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
	사회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LH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후 사회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고, 운영기관은 한집에서 여러명이 방을 나누어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형태 제공
	청년매입 임대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기존주택 매입, 공급대상지역 이외 지자체 출신의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주택도시공사	역세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공급
주택 구입 및 전월세자금 융지원	디딤돌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연2.26~3.15%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국토교통부	만 19세 이상 25세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3500만원 한도(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2.3~2.7%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국토교통부	만 34세 이하 청년(단독세대주)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연소득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이하 무주택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자에게 총 960만원을 연 1.5%~2.5%로 2년간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국토교통부	만 34세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 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에게 최대 1억원을 연 1.2%로 2년간(4회, 최장 10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시행,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1인가구 기준으로 급지별 지원금액 상이
인천	주거	인천시	매입임대사업주택, 전세임대주택 이용자